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1995. 10. 10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9월 30일

○ 회부일자 : 1995년 9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95. 10.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신택희)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심사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를 승인하는 등 현행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승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 공직자윤리법 제8조(법률 제4.853호, '94.12.31) 4항 규정중의 심사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대상중 "금융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제8조 5항을 신설하여 재산내용 및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출처인 소속 부서와 금융거래 변동사항을 다루는 기관을 구별하는 등
관련조문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조례안 : 별첨

9.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